

의안번호	2201579
의 퇴 인	이강일의원
회 답 일	2024.08.29.
추계번호	24D18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6조의2제1항(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단서 신설	법원은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함 다만, 제294조의3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되 영상녹화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6조의2제1항(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단서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안 제5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현행법 제56조의2제1항¹⁾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여야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녹음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1)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2조의2²⁾에 따라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에 대하여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녹음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해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경우, 시스템의 확장·유지보수 비용과 운영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대법원에 따르면, 법정에 녹음시설 또는 녹음·녹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³⁾을 할 수 있으나, 영상녹화의 경우 추가적인 시설 설치와 시스템 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 다만, 영상녹화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실시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심리 건수, 영상녹화시설 설치 수량 및 평균 비용, 평균 영상녹화시간, 시스템 확장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대법원은 2024년 현재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으로 489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거 내역사업의 하나로 2019년부터 ‘전자법정 구축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 기준 41억 3,800만원 편성

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2조의2(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판절차 중 증인신문절차 또는 피고인신문절차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녹음한다. (단서 생략)

3)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5조의2(녹음·영상녹화의 방식 및 조서 인용) ①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음은 디지털 방식의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기사, 법원사무관 등은 휴대하고 있는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한 후 그 전자파일을 법정녹음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